|  |  |  |
| --- | --- | --- |
| **북경시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경재세[2016]639호  ：  각 구(區) 재정국,지방세무국,장애인연합회,시지세국직속분국,북경세관의 각 산하사무처:  <재정부,국가세무총국,중국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 사용 관리방법> 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재세[2015]72호)를 전달하고 <북경시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 사용 관리방법>을 인쇄 발표하니 이를 모두 준수하여 집행하길 바란다.  첨부:  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중국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 사용 관리방법>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 (재세[2015]72호)  2. 북경시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 사용 관리방법  북경시 재정국  북경시 지방세무국  북경시장애인연합회  2016년4월18일  제1장 총칙  제1조 우리 시의 장애인취업보장금(이하 ‘보장금’으로 약칭)징수 사용관리를 규범화하고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장애인취업조례>,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 사용 관리방법>(재세[2015]72호)와 <북경시의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실시방법> 등 규정에 의거,우리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보장금은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취업을 안배하지 않은 기관,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민간 非기업단위(이하 “사용단위”로 약칭)가 납부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제3조 보장금의 징수,사용,관리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장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1급~8급)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5조 보장금의 징수,사용 및 관리는 응당 재정부문의 감독검사와 심계기관의 심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징수 및 납부  제6조 우리 시 행정구역 내의 단위는해당 단위 재직 직원총수 1.7%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취업을 안배해야 한다.상술한 규정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사용단위는 장애인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하여 취업연령 내의 장애인과 1년 이상(1년 포함)의 노동계약(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실제 지불하는 급여가 북경시 최저급여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또한,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사용단위가 안배한 장애인 취업인수로 계상될 수 있다.  사용단위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1급~2급)소지자 1명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1급~3급)소지자 1명의 취업을 안배하는 경우, 2명의 장애인취업을 안배한 것으로 계산한다.  사용단위가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을 모집 채용하는 경우,응당 안배한 장애인취업인수로 계상해야 한다.  제8장 보장금은 전년도에 사용단위가 안배한 장애인취업이 규정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한 인원수 차액과 해당 단위의 재직직원 연평균급여의 적(積)으로 계산한다.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장금 연도 납부액=(전년도 사용단위의 재직직원 인원수 \*1.7%-전년도 사용단위가 실제로 안배한 장애인 취업인수)\*전년도 사용단위 재직직원 연평균 급여  사용단위 재직직원은 사용단위의 정규직원 또는 법에 의거하여 사용단위에 1년 이상(1년 포함)노동계약(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전년도 사용단위의 재직직원 인원수는 전년도 해당 단위의 재직직원 연평균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결과는 반드시 정수(整數)이어야 한다.계절성 사용직원은 응당 연평균 직원사용 인원수로 환산해야 한다.노무파견방식의 사용직원은파견회사의 재직직원 인원수로 계상한다.  전년도에 사용단위가 실제로 안배한 장애인취업 인원수는 전년도에 해당 단위가 실제로 장애인 취업을 안배한 인원수를 의미하며,만1년 미만일 수 있고,만 1년 미만인 경우 월단위로 계산한다.  전년도 사용단위의 재직직원 급여총액은 국가통계국 유관문건에서 정한 규격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시간제 급여,개수불제 급여,상여금,잔업급여,보조금,지원금,특수상황에서 지불된 급여 등 항목을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단위의 재직직원 연평균 급여는 사용단위의 전년도 재직직원 급여총액을 사용단위의 재직직원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사용단위의 장애인취업 안배가 규정된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인원 차액은 공식에 따른 계산결과를 기준으로 하며,정수(整數)가 아닐 수 있다.  제9조 보장금은 지방세무기관에서 책임지고 징수한다.장애인취업을 안배한 사용단위는 먼저 지세등기지역에 소재한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에 가서 심사확인을 진행하고,다시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보장금을 자가 신고 납부한다.장애인취업을 안배하지 않는 사용단위는 자가심사-자가납부 방식을 채택하여,주관 지방세무기관에 보장금을 신고 납부한다.  제10조 보장금은 연간단위로 계산하여 징수 납부한다.매년 2회 분할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매회에 전체연도에 납부해야 할 보장금의 50%를 신고 납부한다.징수 납부기간은 매년 5월1일~5월15일, 9월1일~9월15일이다.자원(自愿)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용단위가 5월15일 이전에 일시불로 전체연도에 납부해야 할 보장금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2016년의 징수납부기간은 8월1일~9월30일이다.  사용단위는 규정 기한 내에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보장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징수기간 마지막 날이 법정공휴일인 경우,공휴일 종료 후 익일이 징수기간 마지막 날이 된다.징수기간 중 연속 3일 이상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공휴일 일수만큼 순연된다.신고할 때,사용단위는 해당 단위의 전년도 재직직원 총수,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의 심사 확인을 받은 실제로 안배한 장애인 취업인수,재직직원 연평균 급여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주관 지방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용단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사용단위가 적시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부실신고한 경우,보장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응당 보장금 납부를 재촉하고 추징해야 한다.  제12조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는 지방세무기관에 협조하여 보장금 징수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용단위는 매년 4월1일~4월30일 기간에 지세등기지역의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에 전년도에 해당 단위가 안배한 장애인 취업인수를 신고해야 한다.규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장애인 취업을 안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016년은 계속하여 7월에 심사확인 업무를 진행한다.신고기간 종료 후,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는 적시에 우리 시의 지방세무기관에 사용단위가 실제로 안배한 장애인 취업인원수를 제공한다.  제13조 우리 시는 금융부문-세무기관-재정기관-상업은행의 세수수입 전자납부를 위한 횡적연합네트워크(the Horizontal Networking among Finance Departments, Taxation Authorities, the Treasury and Commercial Banks for the Electronic Payment of Tax Revenues to the Treasury) 방식을 도입하여 보장금을 징수 납부한다.주관 지방세무기관은 보장금을 징수할 때사용단위에 세수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제14조 보장금 전액은 지방국고로 납입한다.우리 시의 보장금 분배비율은 4:6의 비율로 시(市)와 구(區)가 등급을 나누어 사용한다.  제15조 공상등기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배한 장애인취업인수가 재직직원 총수의 1.7%에 도달하지 않았고,재직직원총수가 20명 이하(20명 포함)인 소형기업에 대한 보장금 징수를 면제한다.  제16조 사용단위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또는 기타 돌발사건에 직면하여 중대하고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입은 경우,보장금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단위가 보장금 감면을 신청하는 최고한도액은 1년에 납부해야 할 보장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보장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최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단위가 보장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지세등기지역 소재구(區)의 재정부문에 서면으로 신청하고,구(區)재정부문이 심사하여 회답하며,다시 시(市)재정국에 비안(등기)하고 그 회답결과를 동급 지세부문에 고지한다.  보장금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 비준을 받은 사용단위의 명단은 각 구(區)재정부문에서 매년 1회 공고한다.공고내용에는 비준기관,비준문건번호,보장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비준한 주요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지방세무기관은 규정 범위,기준과 기한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 보장금을 징수해야 하며 보장금의 적시,전액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우리 시에 소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도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보장금을 감면하거나 납부유예할 수 없으며,보장금의 징수대상과 범위,기준을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사용단위가 비율에 따라 장애인취업을 안배하고 보장금을 납부하는 공시제도를 구축한다.  각 구(區)장애인연합회는 매년 사회에 해당 지역의 사용단위가 안배해야 할 장애인취업인수,실제 안배한 장애인취업인수,규정에 따라 안배하지 않은 장애인취업인수를 발표해야 한다.  각 구(區)지방세무국과 직속분국은 정기적으로 사회에 해당 지역의 사용단위가 납부한 보장금 현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20조 보장금 반환은 사용단위가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신청한다.사용단위가 안배한 장애인취업인수 심사확인에 오류가 있는 경우,먼저 지세등기지역의 구(區)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에 가서 다시 장애인인원수 심사확인을 진행한다.반환수속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장 사용관리  제21조 보장금은 지방 일반 공공예산 총괄 안배범위에 포함된다.주로 장애인 취업 지원,장애인 생활 보장용으로 사용된다.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직업훈련,직업교육 및 직업재활 지출  (2)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의 장애인취업서비스 제공,직업기능대회(기능전시활동 포함)지출.사용단위의 장애인취업 안배에 필요한 시설설비 구매, 개조와 지원성서비스비용의 보조,보조성취업기구의 건설과 운영비용 보조  (3) 장애인이 개체경영,자가창업,유연하고 자유로운 취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경영장소의 임대,개업자금,시설설비구매의 보조 및 소액대출 이자할인. 각종 형식의 취업장애인 사회보험료 납부 보조,사용단위 직무보조금. 농촌장애인의 재배,양식,수공업 및 기타 형식의 생산노동 지원  (4)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취업을 안배하는 사용단위에 대한 인센티브,장애인취업 안배에서 현저하게 훌륭한 성적을 나타낸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5) 공익성 직무 취업,보조성 취업,유연하고 자유로운 취업에 종사하여 그 수입이 현지 최저급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생활에 확실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구제금 보조  (6) 지방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문이 비준한 장애인취업 촉진,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중증 장애인의 생활 보장 등을 위한 용도의 기타 지출  제22조 각급 장애인연합회 소속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의 정상적인 경비지출은 동급 재정예산에서 총괄하여 안배한다.  제23조 정부구매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북경시 정부구매법률제도의 규정에 따라 요구에 부합하는 국립,민간 등 각종 취업서비스기구를 선택하여 장애인 직업훈련,직업교육,직업재활,취업서비스,취업지원 등 업무를 맡아하도록 한다.  제24조 각급 장애인연합회,재정부문은 매년 보장금으로 장애인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지출을 보장한 상황을 사회에 발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5조 단위와 개인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재정위법행위처벌처분조례>, <행정사업성 수수료, 금고와 벌금을 병행한 형벌성 수입의 수지(收支) 2개라인 관리규정 위반 행정처분 임시규정>등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1) 임의 보장금 감면 또는 보장금 징수범위,대상 및 기준의 변경  (2) 납입해야 할 보장금의 은닉,월권 지불  (3) 납입해야 할 보장금의 지체,차압,유용  (4) 규정된 예상등급,예산과목에 따라 보장금을 국고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을 위반하여 보장금을 사용하는 경우  (6) 기타 국가 재정수입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26조 사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아 주관 세무기관이 납부를 최고하였으나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정부문이 <장애인취업조례>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7조 보장금 징수,사용관리 관련 부서의 업무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장금 징수 및 사용관리 업무 중에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5장 부칙  제28조 본 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해석 책임은 북경시 재정국이 북경시 지방세무국,북경시장애인연합회에 있다. |  | **北京市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办法**  京财税[2016]639号  各区财政局、地方税务局、残疾人联合会，市地税局直属分局，北京海关各隶属办事处：  　　现将《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中国残疾人联合会关于印发<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办法>的通知》（财税〔2015〕72号）转发给你们，并将《北京市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办法》印发给你们，请一并遵照执行。  　　附件：  1. 财政部、国家税务总局、中国残疾人联合会关于印发《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办法》的通知（财税〔2015〕72号）  　　2. 北京市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办法  北京市财政局  　　北京市地方税务局  　　北京市残疾人联合会  　　2016年4月18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本市残疾人就业保障金（以下简称保障金）征收使用管理，促进残疾人就业，根据《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残疾人就业条例》、《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办法》（财税〔2015〕72号）和《北京市实施〈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办法》等规定，结合本市实际情况，制定本办法。  　　第二条 保障金是为保障残疾人权益，由未按规定安排残疾人就业的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民办非企业单位（以下简称用人单位）缴纳的资金。  　　第三条 保障金的征收、使用和管理，适用本办法。  　　第四条 本办法所称残疾人，是指持有《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证》或《中华人民共和国残疾军人证》（1至8级）的人员。  第五条 保障金的征收、使用和管理应当接受财政部门的监督检查及审计机关的审计监督。  第二章 征收缴库  　　第六条 本市行政区域内的用人单位，应当按照不少于本单位在职职工总数1.7%的比例安排残疾人就业，达不到上述规定比例的，应当缴纳保障金。  　　第七条 用人单位将残疾人录用为在编人员或依法与就业年龄段内的残疾人签订1年以上（含1年）劳动合同（服务协议），且实际支付的工资不低于北京市最低工资标准，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方可计入用人单位所安排的残疾人就业人数。  　　用人单位安排1名持有《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证》（1至2级）或《中华人民共和国残疾军人证》（1至3级）的人员就业的，按照安排2名残疾人就业计算。  　　用人单位跨地区招用残疾人的，应当计入所安排的残疾人就业人数。  　　第八条 保障金按上年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未达到规定比例的差额人数和本单位在职职工年平均工资之积计算缴纳。计算公式如下：  　　保障金年缴纳额=（上年用人单位在职职工人数×1.7%-上年用人单位实际安排残疾人就业人数）×上年用人单位在职职工年平均工资。  　　用人单位在职职工，是指用人单位在编人员或依法与用人单位签订1年以上（含1年）劳动合同（服务协议）的人员。上年用人单位在职职工人数，按上年本单位在职职工的年平均人数计算，结果须为整数。季节性用工应当折算为年平均用工人数。以劳务派遣用工的，计入派遣单位在职职工人数。  　　上年用人单位实际安排残疾人就业人数，是指上年本单位安排残疾人就业的实际人数，可以不满1年，不满1年的按月计算。  　　上年用人单位在职职工工资总额按照国家统计局有关文件规定口径计算，包括计时工资、计件工资、奖金、加班加点工资、津贴、补贴以及特殊情况下支付的工资等项目。  　　上年用人单位在职职工年平均工资，按用人单位上年在职职工工资总额除以用人单位在职职工人数计算。  　　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未达到规定比例的差额人数，以公式计算结果为准，可以不是整数。  　　第九条 保障金由地方税务机关负责征收。安排残疾人就业的用人单位先到地税登记地所在的残疾人就业服务机构进行审核，再向主管地方税务机关自行申报缴纳保障金；未安排残疾人就业的用人单位采取自核自缴的方式向主管地方税务机关申报缴纳保障金。  　　第十条 保障金按年计算征缴，每年可分两次申报缴纳，每次申报缴纳全年应缴保障金的一半，征缴期为每年5月1日到 5月15日和9月1日到9月15日；在自愿的原则下，用人单位可在5月15日前一次性申报缴纳其全年应缴保障金。其中，2016年的征缴期为8月1日至9月30日。  　　用人单位应按规定时限向主管地方税务机关申报缴纳保障金。征缴期的最后一日是法定休假日的，以休假日期满的次日为征缴期的最后一日；在征缴期内有连续3日以上法定休假日的，按休假日天数顺延。在申报时，用人单位应当提供本单位上年度在职职工人数、经残疾人就业服务机构审核后的实际安排残疾人就业人数、在职职工年平均工资等信息，并保证信息的真实性和完整性。  　　第十一条 主管地方税务机关应定期对用人单位进行检查，发现用人单位未按时申报缴纳、申报不实、少缴纳保障金的，应当催报并追缴保障金。  　　第十二条 残疾人就业服务机构应当配合地方税务机关做好保障金征收工作。  　　用人单位应于每年4月1日至4月30日向地税登记地的残疾人就业服务机构申报上年本单位安排的残疾人就业人数。未在规定时限申报的，视为未安排残疾人就业。其中，2016年仍在7月份进行审核工作。在申报期结束后，残疾人就业服务机构及时向本市地方税务机关提供用人单位实际安排的残疾人就业人数。  第十三条 本市保障金征收采取财税库银税收收入电子缴库横向联网方式征缴。主管地方税务机关征收保障金时，应当向用人单位开具税收票证。  　　第十四条 保障金全额缴入地方国库。本市保障金的分配比例，按照4:6的比例由市和区分级使用。  　　第十五条 自工商登记注册之日起３年内，对安排残疾人就业人数未达到在职职工总数的1.7%，且在职职工总数在20人以下（含20人）的小微企业，免征保障金。  　　第十六条 用人单位遇不可抗力自然灾害或其他突发事件遭受重大直接经济损失，可以申请减免或者缓缴保障金。  　　用人单位申请减免保障金的最高限额不得超过1年的保障金应缴额，申请缓缴保障金的最长期限不得超过6个月。  　　用人单位申请保障金减免或缓缴的，应先向地税登记地所在区的财政部门提出书面申请，由区财政部门进行审核批复，报市财政局备案并将批复结果告知同级地税部门。  批准减免或者缓缴保障金的用人单位名单，应当由各区财政部门每年公告一次。公告内容应当包括批准机关、批准文号、批准减免或缓缴保障金的主要理由等。  　　第十七条 地方税务机关应当严格按照规定的范围、标准和时限要求征收保障金，确保保障金及时、足额征缴到位。  　　第十八条 本市范围内任何单位和个人均不得违反本办法规定，擅自减免或缓征保障金，不得自行改变保障金的征收对象、范围和标准。  　　第十九条 建立用人单位按比例安排残疾人就业及缴纳保障金公示制度。  　　各区残疾人联合会应当每年向社会公布本地区用人单位应安排残疾人就业人数、实际安排残疾人就业人数和未按规定安排残疾人就业人数。  　　各区地方税务局、直属分局应当定期向社会公布本地区用人单位缴纳保障金情况。  　　第二十条 保障金退款由用人单位向主管地方税务机关提交申请。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人数审核有误的，应当先到地税登记地的区残疾人就业服务机构重新审核残疾人人数。办理退款手续的具体要求另行制定。  第三章 使用管理  　　第二十一条 保障金纳入地方一般公共预算统筹安排，主要用于支持残疾人就业和保障残疾人生活。支持方向包括：  　　（一）残疾人职业培训、职业教育和职业康复支出。  　　（二）残疾人就业服务机构提供残疾人就业服务和组织职业技能竞赛（含展能活动）支出。补贴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所需设施设备购置、改造和支持性服务费用。补贴辅助性就业机构建设和运行费用。  　　（三）残疾人从事个体经营、自主创业、灵活就业的经营场所租赁、启动资金、设施设备购置补贴和小额贷款贴息。各种形式就业残疾人的社会保险缴费补贴和用人单位岗位补贴。扶持农村残疾人从事种植、养殖、手工业及其他形式生产劳动。  　　（四）奖励超比例安排残疾人就业的用人单位，以及为安排残疾人就业做出显著成绩的单位或个人。  　　（五）对从事公益性岗位就业、辅助性就业、灵活就业，收入达不到当地最低工资标准、生活确有困难的残疾人的救济补助。  　　（六）经地方人民政府及其财政部门批准用于促进残疾人就业和保障困难残疾人、重度残疾人生活等其他支出。  　　第二十二条 各级残疾人联合会所属残疾人就业服务机构的正常经费开支，由同级财政预算统筹安排。  　　第二十三条 积极推行政府购买服务，按照北京市政府采购法律制度规定选择符合要求的公办、民办等各类就业服务机构，承接残疾人职业培训、职业教育、职业康复、就业服务和就业援助等工作。  　　第二十四条 各级残疾人联合会、财政部门应当每年向社会公布保障金用于支持残疾人就业和保障残疾人生活支出情况，接受社会监督。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五条 单位和个人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和《违反行政事业性收费和罚没收入收支两条线管理规定行政处分暂行规定》等国家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处理：  　　（一）擅自减免保障金或者改变保障金征收范围、对象和标准的；  　　（二）隐瞒、坐支应当上缴的保障金的；  　　（三）滞留、截留、挪用应当上缴的保障金的；  　　（四）不按照规定的预算级次、预算科目将保障金缴入国库的；  　　（五）违反规定使用保障金的；  　　（六）其他违反国家财政收入管理规定的行为。  　　第二十六条 用人单位未按规定缴纳保障金，经主管税务机关催缴后仍未缴纳的，由财政部门按照《残疾人就业条例》等法律法规，进行处理处罚。  　　第二十七条 保障金征收、使用管理有关部门的工作人员违反本办法规定，在保障金征收和使用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  第五章 附 则  　　第二十八条 本办法自2016年1月1日起施行，由北京市财政局会同北京市地方税务局、北京市残疾人联合会负责解释。 |